

소멸청구 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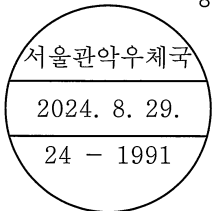
수신인: 박광윤

평택시 서정3길 123, 101호(서정동, 서정빌라)

- 발신인들은 귀하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평택시 서정동 서정빌라 101호의 소유주였던 강호연씨의 아버지(강용원)와 아내(양정숙)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귀하가 거주하는 서정빌라 101호는 강호연의 소유였고, 발신인들은 강호연씨의 상속인으로서 위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 그동안 귀하는 발신인 측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서정빌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서정빌라 101호를 점거하고, 직접 거주까지 해 오셨습니다. 아무리 강호연이 저렴하게 매입했다 하더라도, 타인의 집을 이렇게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해 오신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귀하도 확인해 주셨다시피, 귀하는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서정빌라 101호를 인근 공장의 직원 숙소로 임대해 놓아 임대수익도 벌어들였습니다.
- 발신인들이 확인해 보니, 아무리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업자 분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유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강호연의 사망 후 발신인 양정숙 등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서정빌라에서 임대수익이라도 벌어들여야 할 상황입니다.
- 이에 발신인들은 이 통지서를 통해 귀하가 행사하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오니, 조속히 서정빌라 101호를 발신인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나아가 강호연이 소유권을 취득한 2022년 10월부터의 사용수익도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9일

발신인 강용원,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111, 101동 502호(방배동, 서래아과)
양정숙, 서울 관악구 봉천3길 12, 301호(성현동, 성현연립)



본 우편물은 2024-8-29

제199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관악우체국장

